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고,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각 기관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9470호, '23.6.13 공포, '23.12.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의 표시방법과 가액산정방법, 거래내역 신고방법,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 기재 의무화(제4조제7항제4호 신설)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함

나. 가상자산의 재산등록방법을 정함(제4조제3항 신설)

가상자산 재산등록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여 표시하도록 함

다.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법을 정함(제4조의2제5항 신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액으로 함

- 2) 그 밖의 가상자산은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함

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 방법 마련(제5조의2)

- 1) 가상자산의 거래내역 신고 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함
 - 2)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대상을 신고대상기간 중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로 정함
 - 3)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방법은 거래내역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함
- 마.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의 제출 등에 가상자산 추가 (제5조의5제1항)

재산등록의무자 등이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제공받는 정보에 가상자산을 추가함

바.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제27조의15 신설)

- 1)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함
- 2) 가상자산 보유 제한 부서, 가상자산 보유 확인방안, 징계 등 조치

방안 등 각 기관의 장이 가상자산 보유제한 제도 운영시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할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여 표시한다.

제4조제7항(중전의 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상자산

제4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 제4조제3항제1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제5조의2의 제목 “(주식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을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을 “주식 및 가상자산”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제5조의2제2항 중 “주식거래의”를 “거래의”로, “주식에”를 “주식 및 가상자산에”로, “주식거래로”를 “거래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식거래내역의 신고는 주식변동사항신고서”를 “거래내역의 신고는 변동사항신고서”로, “위탁계좌번호, 주식”을 “계좌번호,”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을”을 “거래내역서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내역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자료”를 “금융자료(가상자산자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7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15(기관별 가상자산보유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

라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

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가상자산에 관한 수사·조사·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3. 가상자산에 관한 신고·인가·허가·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4. 가상자산에 관한 조세의 조사·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5. 가상자산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6. 가상자산에 관한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7. 가상자산에 관한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8.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직무

② 법 제14조의17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상자산의 보유가 제한되는 부서 또는 직위
2.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 확인 방안
3. 가상자산을 보유한 공직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③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17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의 운영 결과를 매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① 삭제 ② (생략) <u><신설></u> ③ ~ ⑤ (생략) ⑥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⑦ (생략) 제4조의2(등록대상재산의 가액산정방법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4조(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할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여 표시한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⑦ ----- ----- -----. 1. ~ 3. (현행과 같음) 4. 가상자산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4조의2(등록대상재산의 가액산정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조제3항제1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⑤ (생략) 제5조의2(주식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u>주식</u>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u><신설></u>	<u>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u> 2. <u>그 밖의 가상자산 :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① ----- --- <u>주식 및 가상자산</u>----- --. 1. 2. (현행과 같음)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	---

② 신고대상 주식거래의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주식에 대한 신고 대상기간 중의 모든 주식거래로 한다.

③ 주식거래내역의 신고는 주식 변동사항신고서에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의5(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하여 금융자료와 부동산자료를 제공 받으려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등록기관을 거쳐 공직자

② ----- 거래의 -----
----- 주식 및 가상자산
에 ----- 거래로 -----
-----.

③ 거래내역의 신고는 변동사항 신고서-----
----- 계좌번호, -----

----- 거래내역서를 -----

----- . 다만, 금융 기관으로부터 거래내역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5(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 -----

금융자료(가상자산자료를 포함한다)-----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 2.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15(기관별 가상자산보유
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7제1
항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정
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
는 부서 또는 직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

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
되는 직무

2. 가상자산에 관한 수사·조사
·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3. 가상자산에 관한 신고·인가
·허가·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4. 가상자산에 관한 조세의 조
사·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5. 가상자산에 관한 지도·감독
에 관련되는 직무

6. 가상자산에 관한 예산의 편
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7. 가상자산에 관한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8.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직무

② 법 제14조의17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상자산의 보유가 제한되는 부서 또는 직위

2.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 확인 방안

3. 가상자산을 보유한 공직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 방안

③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17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의 운영 결과를 매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8452